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정을호 · 서삼석 · 이연희
박정현 · 조정식 · 김남근
민병덕 · 안호영 · 강준현
박홍배 · 박민규 · 김남희
정준호 · 이개호 · 고민정
김원이 · 최혁진 · 김영진
김문수 · 오세희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·직원 및 재학생,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,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,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.

이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

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
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
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학생이 추천한 동문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회)의 설 치 등) ① (생 략)	제32조의3(기금운용심의회)의 설 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 에 따른 교원, 직원 및 재학생 은 각각 2명 이상, 제2호에 따 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 함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 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</u> <u>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</u>	3. <u>학생이 추천한 동문</u>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